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97

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:김재원·조 국·서왕진

김준형 · 강경숙 · 진선미

이해민 • 박은정 • 차규근

김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현행 「상법」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.

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을통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, 이와 같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총 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을 통한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(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 3 신설).

법률 제 호
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2(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) ① 조합원은 협동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-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서면 또 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③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주사무소에 갖추어 조합원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고 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- ④ 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3(원격영상회의)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제23조의2에 따라

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이 해당 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회의(조합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3조의2(서면 또는 전자적 방
	식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
	행사) ① 조합원은 협동조합이
	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
	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
	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
	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
	있다.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
	석한 것으로 본다.
	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제1
	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
	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
	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
	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
	로 제공하여야 한다.
	③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
	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
	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,
	대의원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
	날부터 3개월간 주사무소에 갖
	추어 조합원이 열람을 청구한
	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고 총회,
	대의원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

<신 _설>

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④ 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
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
권 및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
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3(원격영상회의) ① 협동 조합은 조합원이 제23조의2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이 해당 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(조합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를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원격영상회의에 참여한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